

인권 / 노인인권 / 실천

인 권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

노인 인권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권 실천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본인)'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



인권감수성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서 매우 작은 요소부터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관련된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

인권 문제에 대한
예민함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줄 아는
공감

다름과 틀림의 구분
**일상적 감각의
틀 깨기**

“어느 누구도 악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인권감수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가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영화감독 박찬욱



보편적 인권

인권이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함

보편적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의 가정 가까이에 있는 작은 장소,
너무나 가깝고 작아서 세계 어느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그곳이 개개인의 세계일지라도 말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자신이 일하는 농장이나 사무실도
모두 개인의 세계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보편적 인권이 의미가 없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1958년 세계인권선언 10주년 기념식

Eleanor Roosevelt



에이지즘 / AGEISM

나이가 들에 따라 사람의 매력, 지적·성적 능력, 생산성 등이 떨어진다는 믿음을 근거로,
나이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편견



'고령자 차별주의' '연령 차별주의'

만화계를 대표하는 만화가 천계영씨 트위터



Kye Young Chon 16:09 | twitter

어떻게 그 나이에 아이돌을 좋아할 수 있냐고 주변에서 놀라워한다.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더 깜짝 놀라는 게... 아이돌을 무뎌 연골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늙은 게 뭘 상관하여...
리모콘 돌릴 힘 남아있을 때까지 좋아할 수 있음.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학대의 원인]



학대피해노인의 특성

- 연령이 높음
- 교육수준이 낮음
- 건강이 나쁨
- 일상생활에 의존적
- 경제적 여유가 없음
- 우울감과 불안정도 높음
- 자아존중감이 낮음
- 사회적으로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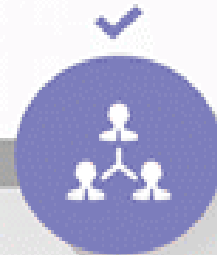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특성

- 경제적으로 의존적
-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충동적·폭력적·비난적 성격
- 알코올 및 약물 문제
- 부양 경험 부족
- 사회적 지지 부족



가족상황요인

- 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상태
- 부양부담과 부양기대 간 불일치
- 가족 간 지위(輩)변화
- 가족 간 갈등
- 높은 상호 의존성
- 낮은 지지체계



사회문화요인

- 급속한 고령화
(신체, 심리, 경제측면 의존노인 증가)
- 가족구조·기능변화
- 가치관 및 노인부양 의식변화
- 사회적 자원부족

노인 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 및 폭력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및 폭력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정 의
신 체 적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정서적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 적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희롱, 성추행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재 정 적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 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학대의 신고와 관심

- 노인학대의 징후를 빠르게 식별 가능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피해노인이 생활시설에
방문할 개연성이 높음



학대의 흔적

학대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음



신뢰적 위치

피해자가 생활시설 종사자를
믿고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음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하의 벌금 →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시행일 2016. 12. 30.)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
(’16.1.25.시행)되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노인복지법이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노인학대신고의무자로 확대



동법 제39조의12 법에 명시
(비밀누설의금지)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학대 개입과정



01

신고접수

노인생활시설 요양보호사는 시설에서 방임이 의심된다며 신고함

- ☑ 신고자를 통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파악함(부적절한 기저귀 케어 및 식사제공 등)



02

현장조사

관할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실시, 시설장 및 종사자, 입소어르신 상담 진행

- ☑ 시설장 및 사무장 상담
- ☑ 요양보호사들 및 간호사 상담
- ☑ 입소어르신들 상담
- ☑ 현장조사 초기조치



03

사정

- ☑ 학대피해 내용 판단
- ☑ 신고인, 학대피해노인, 시설장 및 원장, 관할구청의 욕구사정
-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시설), 요양보호사의 위험요인 및 강점사정



04

개입

개입목표와 개입계획을 세움

- ☑ 시설내 입소어르신에 대한 기저귀케어가 개별적 욕구에 따라 충분히 제공
- ☑ 관할구청 해당 시설내 입소어르신 권리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



05

사례종결

- ☑ 목표와 부합하는 사례진행 및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위험요인 없다고 판단
- ☑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하게 양로원의 보호받고 있으므로 사례 종결



06

사후관리

- ☑ 월1회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모니터링 진행
- ☑ 시설장 및 종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 확인
- ☑ 입소한 시설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상담일지는 비공개)

노인학대처벌기준

	(법칙) 제55조 2	(법칙) 제55조 3		(법칙) 제55조 4	(법칙) 제57조	(과태료) 제61조 2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
벌금	2천만원 이하	1천5백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300만원의 과태료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신설) (시행일 2016. 12. 30)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사망에 이르게 한 때(신설) (시행일 2016. 12. 30)	노안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상형조정(시행일 2016. 12. 30) 1천5백만원 → 3천만원			상형조정(시행일 2016. 12. 30) 3백만원 → 5백만원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신고무자의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함
- ☑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이용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 취하기
- ☑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
- ☑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
-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됨
- ☑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감사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번호 1577-1389 ***

E행복한 요양원 1,2,3호점